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19가합112923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

담당변호사 문경재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현덕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7.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753,9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2023. 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82,211,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8. 말경까지 교제하면서 금전 거래를 하여 온 사이이다.

나. 대여금의 지급 및 상환 내역

- 1)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① 2015. 9. 23.경 200,000,000원, ② 2016. 3. 4.경 70,000,000원, ③ 2018. 2. 5.경 100,000,000원, ④ 2018. 5. 3.경 30,000,000원, ⑤ 2018. 5. 11.경 10,000,000원, 2018. 7. 16.경 100,000,000원, 2018. 11. 27.경 86,000,000원 합계 596,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대여금’이라 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① 2017. 8. 5.경 100,000,000원, ② 2017. 11. 30.경 30,000,000원, ③ 2018. 5. 26.경 20,000,000원, ④ 2018. 6. 7.경 10,000,000원 합계 1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지급’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제1 내지 3 대여금에 관한 각 차용증의 작성

- 1)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제1 대여금과 관련하여 자필로 “200,000,000원을 피고가 C 빌라 신축자금으로 차용하고 분양 후 정산하여 월 이자 1,500,000만 원1) 을 합하여 상환한다”라고 기재된 2015. 9. 23.자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이하 ‘2015. 9. 23.자 차용증’이라 한다).
- 2)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제2 대여금과 관련하여 자필로 “70,000,000원을 차용합니다. 원고가 상환을 요구할 경우 월 이자 50만 원을 합하여 즉시 상환한다”라고 기재된 2016. 3. 4.자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이하 '2016. 3. 4.자 차용증'이라 한다).

3)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제3 대여금과 관련하여 자필로 "100,000,000원을 차용하였음. 연 5% 이자"라고 기재된 2018. 2. 5.자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이하 '2018. 2. 5.자 차용증'이라 한다).

라. 2018. 4. 6.자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1) 원고는 2018. 4. 6.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3 대여금 합계 370,000,000원(= 200,000,000원 + 70,000,000원 +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8. 4. 6.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지급 합계 130,000,000원(= 100,000,000원 + 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2) 피고는 2018. 4. 6.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내지 3 대여금의 남은 채무액을 확정하여 "24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피고가 빌렸음을 확인합니다. 2018. 12. 말까지 돈이 되는 대로 원고의 계좌로 송금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마. 근저당권의 설정·해지 등에 관하여 발생한 이 사건 비용의 부담

1) 피고는 2018. 6. 19. 피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18. 6.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단1370호로 청구금액 100,000,000원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3) 위 가압류 등기는 2018. 7. 26. 같은 달 17.자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8. 11. 26. 같은 달 19.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4) 이후 피고는 2018. 12.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재차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5) 원고는 2018. 12. 29. 피고에게 문자 메시지로 위 가압류 등기의 기입 및 말소에 든 비용,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 및 말소에 든 비용, 피고의 C 빌라 신축사업 등 관련하여 원고가 대납한 세무사 비용 합계 14,160,000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위 요청에 응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용 부담 약정’이라 한다).

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 관련 이 사건 배당액

1)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F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9. 1. 22. 위 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며, 2020. 4. 8. 이 사건 아파트가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2) 원고는 2020. 5. 14. 위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3순위로 275,779,011원을 배당받았다(이하 ‘이 사건 배당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 17 내지 19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무법인 G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는 2018. 11. 1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내지 7 대여원리금에 관하여 새로운 차용증서(갑 제7호증 및 갑 제15호증, 이하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함으로써 채권채무관계를 명확히 하였는데,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450,000,000원을 이자를 연 8%로 하여 차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가) 이 사건 제1 대여금 200,000,000원과 관련하여 2015. 9. 23.자 차용증 기재와 같이 월 1,500,000원의 이자 약정이 있었으므로,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연 9%(= 월 1,500,000원 ×

12개월 ÷ 200,000,000원)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제2 대여금 70,000,000원과 관련하여 2016. 3. 4.자 차용증 기재와 같이 월 500,000원의 이자 약정이 있었으므로,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연 8.5%(= 월 500,000원 × 12개월 ÷ 70,000,000원,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제3 대여금 100,000,000원과 관련하여 2018. 2. 5.자 차용증 기재와 같이 연 5%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

라) 피고가 2018. 6. 1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이 사건 제1 내지 3 대여원리금에 관하여 새로운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채무관계를 명확히 한 것 즉,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피고가 변제기인 2018. 12. 말경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준소비대차계약이 합의로 해제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확인서는 더 이상 효력이 없고 소멸된 구채무인 제1 내지 3 대여원리금 채무가 부활한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3 대여원리금 즉, 2015. 9. 23.자 차용증, 2016. 3. 4.자 차용증, 2018. 2. 5.자 차용증에 따른 대여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밖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4 내지 7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비용 부담 약정에 따라 위 비용 또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채권명	채권발생일	채권액(원)	변제기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제1 대여금	2015. 9. 23.	200,000,000	-	이자 연 9%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지연손해금 연 12%)
제2 대여금	2016. 3. 4.	70,000,000	-	이자 연 8.5%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지연손해금 연 12%)
제3 대여금	2018. 2. 5.	100,000,000	-	이자 연 5%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지연손해금 연 12%)
제4 대여금	2018. 5. 3.	30,000,000	-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이후로) 이 사건 배당액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연 12%
제5 대여금	2018. 5. 11.	10,000,000	-	"
제6 대여금	2018. 7. 16.	100,000,000	-	"
제7 대여금	2018. 11. 27.	86,000,000	-	"
이 사건 비용	2018. 12. 29.	14,160,000	-	"
합계		610,160,000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참조).

나)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갑 제7호증 및 갑 제15호증)가 있으나, 갑 제20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2. 6. 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2021고단394호),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는 위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 달리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7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2) 및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 이 사건 제1 내지 3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 약정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내지 3 대여금에 관하여 작성된 각 차용증에 이자에 관한 내용이 자필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0. 30.부터 2018. 12. 31.까지 피고와 여러 차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이자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한 바 없는 사실, 오히려 원고와 피고가 2018. 2. 3. 주고받은 문자 내역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쓰고 이자 많이 주라”라는 말을 듣고 “ㄱㄱ 예고”라고 답하였고, 원고로부터 “이자는 주기 싫은가”라는 말을 듣고 “내 이번에 벌면 힘들게 번 돈 오빠 고마움 봐서라도 꼭 지킬게요”라고 답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이자 은행처럼 연 5%?”라는 말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속력 있는 이자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다가 원고와 피고가 교제하는 사이였던 점, 이 사건 제1, 2 대여금 관련 차용증의 이자는 “월 이자 1,500,000만 원”, “월 이자 50만 원”과 같은 정액으로, 이 사건 제3 대여금 관련 차용증의 이자는 “연 5%”와 같은 비율로 각각 형식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같은 당사자 사이의 금전거래로서는 다소 이례적이라고 볼 것인 점 등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자에 관한 규정이 있는 차용증들의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그 기재를 요청하면서 실제로는 이를 받지 않을 것처럼 말하여 안심을 시켰던 것으로 보이고, 위 나)항 기재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내지 3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확인서 작성일인 2018. 4. 6.경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대여금 액수는

370,000,000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액수는 13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240,000,000원을 빌리기로 하는 내용이므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2018. 4. 6. 기준 잔존 채무액, 즉 이 사건 제1 내지 제3 대여금의 남은 채무액을 240,000,000원(= 370,000,000원 - 130,000,000원)으로 확정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원고 또한 이 사건 확인서로써 준소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제1 내지 3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을 통하여 기존 채무인 이 사건 제1 내지 3 대여원리금 채무는 소멸하고 새로운 채무인 '변제기를 2018. 12. 31로 하는 24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가 성립하게 되는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3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구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2. 31.까지 24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준소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묵시적인 합의해제를 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계약의 실현을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바(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준소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한편, 준소비대차의 경우 기존 채무와 새로운 채무 사이에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3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에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채무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것도 포함된다고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4 내지 7 대여금에 따른 채무와 이 사건 비용 부담 약정에 따른 채무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0. 5.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2. 31. 피고에게 문자 메시지로 “돈 문제는 나도 결론 내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자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문자 메시지로 “내년 새해부터 매달 입금하겠습니다”라고 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4 내지 7 대여금 및 이 사건 비용 부담 약정에 따른 채무의 변제기는 모두 늦어도 2019. 1. 1.

이전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부분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으로 구하는 이 사건 배당액 지급일 다음 날인 2020. 5. 15.은 위 2019. 1. 1.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채권명	채권발생일	채권액(원)	변제기	지연손해금 기산점
이 사건 확인서	2018. 4. 6.	240,000,000	2018. 12. 31.	2019. 1. 1.
제4 대여금	2018. 5. 3.	30,000,000	2019. 1. 1.	2020. 5. 15.
제5 대여금	2018. 5. 11.	10,000,000	"	"
제6 대여금	2018. 7. 16.	100,000,000	"	"
제7 대여금	2018. 11. 27.	86,000,000	"	"
이 사건 비용	2018. 12. 29.	14,160,000	"	"
합계		480,160,000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제3, 4 지급 및 이 사건 배당액 합계 305,779,011원(= 20,000,000원 + 10,000,000원 + 275,779,011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 H에 대한 15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의 채권을 일부 변제하였다.

2)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H에 대한 15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한 것이 원고의 채권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기하여 H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신청을 취하하였는바,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180,000,000원만큼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의 채권을 전부 변제하였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3, 4 지급을 한 사실 및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배당액을 배당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순번	일자	변제액(원)	비고
1	2018. 5. 26.	20,000,000	이 사건 제3 지급
2	2018. 6. 7.	10,000,000	이 사건 제4 지급
3	2020. 5. 14.	275,779,011	이 사건 배당액
합계		305,779,011	

2) 한편, 을 제13,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H에 대하여 150,000,000원 상당의 기계장치 계약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이라 한다), H이 2018. 3. 23. H 소유의 서울 양천구 I건물, J호 등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이하 ‘피고의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가 2018. 6. 19.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면서 피고의 근저당권을 이전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H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것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채무자인 H이 사기죄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채권양수인인 원고와 변제에 대하여 논의 중에 있으므로 채권양도인인 피고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채권이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도 채권양도 자체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채권양도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전받은 피고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2020. 6. 10.경 H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2020. 12. 14.경 경매신청을 취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변제충당

가. 이 사건 제3, 4 지급액 및 이 사건 배당액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므로,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3, 4 지급액은 이 사건 제4, 5 대여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의 충당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3, 4 지급액 합계 30,000,000원(= 20,000,000원 + 10,000,000원)은 각 변제제공 시(2018. 5. 26. 및 2018. 6. 7.)를 기준으로 이행기가 먼저 도래할 채무인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채권 240,000,000원에 충당되고,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채권은 210,000,000원(= 240,000,000원 - 30,000,000원)만이 남게 된다.

다. 이 사건 배당액 275,779,011원은 변제제공 시(2020. 5. 14.)를 기준으로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채권의 2019. 1. 1.부터의 지연손해금 14,372,950원[= 210,000,000원 × 0.05 × (1 + 135일 ÷ 366일), 원 미만 버림], 잔존 원본 210,000,000원 순으로 충당된 후, 나머지 변제금 51,406,061원(= 275,779,011원 - 14,372,950원 - 210,000,000원)은 이 사건 제4 내지 7 대여금 및 이 사건 비용의 각 채무액에 비례하여 안분 충당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188,753,939원(= 제4 대여금 30,000,000원 + 제5 대여금 10,000,000원 + 제6 대여금 100,000,000원 + 이 사건 비용 14,160,000원 - 나머지 변제금 51,406,061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충당 다음 날인 2020. 5.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와 같이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민, 판사 정신영, 판사 김영완

1) 갑 제1호증(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1,500,00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9. 12. 9.자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이 자백하였다가 제6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23. 5. 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비로소 이 사건 제5 대여금의 경우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위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을 제3호증(불기소처분이유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미 확정된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제5 대여금에 관하여 증여받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대여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자백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